

第8節 컴퓨터 프로그램保護

1. 컴퓨터프로그램 保護制度 推進經緯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法的保護의 必要性이 本格的으로 樞頭되기 시작한 것은 컴퓨터의 活用이 一般化되고 그 利用範圍가 社會 및 產業 全般에 걸쳐 擴大되기 시작한 1960年代 以後부터이다.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은 圖書 등 一般文藝著作物과는 달리 技術性과 表現性의 兩面性을 保有하고 있고 프로그램은 시스템分析이나 플로우차트를 作成하는 등 보다 重要한 作業의 前段階過程을 保有하고 있으며 일단 開發된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周圍環境變化에 따라 維持・補修가 持續的으로 이루워지고 있고, 특히 科學技術이나 工業用의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技術發展에 따라 既存 프로그램은 淘汰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既存 프로그램을 母體로 하여 끊임없이 發生되고 있는 特性 등을 保有하고 있어 이를 適切히 受容할 수 있는 制度를 마련하는 일은 容易치 않았다.

當初 國際的으로도 프로그램의 保護必要性은 認定하면서도 위와 같은 特殊性으로 因하여 適用法規를 選擇하는데 있어서는 國際的인 合意에 到達하지 못하였다.

世界知的所有權機構 (WIPO) 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의 保護는 著作權概念과 其他方案을 並行해야 한다고 하는 立場을 表明한 바 있고, 美國은 著作權法을 改正하여 프로그램을 保護하되 發明性과 新規性이 있는 경우에는 特許法에 의한 保護對象이 된다고 하는 立場이며, 日本은 프로그램에 대한 著作物性을 認定치 않고 一般 技術商品次元에서 使用權을 賦與하고 財政制度를 導入하여 形式審查에 의한 登錄制度 등을 骨子로 한 프로그램權法의 制定을 推進코자 하였다.

한편, 西歐 各國 中 西獨은 既存 著作權法으로 프로그램의 保護가 可能한 바 著作權法의 改正이 不必要하다고 하는 立場이고 英國은 特許法에 의한 프로그램의 保護는 反對하고 著作權法에 의한 保護를 主張하였다.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世界的인 判例도 프로그램에 대한 特許權 賦與에 대하여는 否定의 인反面 프로그램의 著作物性 認定에 대하여는肯定의이었으며 否定競爭防止法 또한 企業秘密保護法의 適用對象이 되는 것으로 意見이 모아지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에 對한 具體的인 法的措置는 1980年 美國에서 聯邦著作權法을 改正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著作物에 包含시키므로써 世界 最初로 이루워졌으며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도 一般著作物에서와 같이 著作物性을 賦與하게 되었다.

現在 世界的으로 著作權法에 의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保護하는 國家는 美國, 日本, 英國, 프랑스, 臺灣 등 10數個 國家이며 其他國家에서도 컴퓨터프로그램 保護를 위한 法的措置가 이루어지고 있다.

<圖表IV-8-1>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判例(例示)

區 分	判 例
著作物性 認定 與否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1 美國, Object Code 를 著作物性으로 認定 判示 ◦ 1982 美國, Object Code 는 Source Code 의 著作物權에 의해 保護되어야 한다고 判示 ◦ 1983 西獨 칼스루우州 高等裁判所는 맨하임 地方裁判所의 <u>프로그램</u> 著作物性 不正判決을 破棄하고 著作物性을 認定
特許權 賦與 與否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3 美國, 二進化十進數를 純二進數로 交換하는 <u>프로그램</u>에 대하여 特許請求를 棄却 ◦ 1978 美國, 化學<u>프로그램</u>의 制御시스템 <u>프로그램</u>에 대한 特許請求를 棄却 ◦ 1981 美國, 고무形成裝置內의 溫度 및 成型時間調整用 <u>프로그램</u>에 대한 特許請求를 棄却 <p>※ 美國과 日本에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特許性이 있는 境遇에는 特許法에 의해 保護받을 수 있다고 하는 立場을 堅持</p>
其他法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不正競爭防止法에 의한 保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9 年 美國, 他社의 소프트웨어와 同一 또는 類似한 <u>프로그램</u>을 作成 販賣하는 行爲는 不正競爭行爲에 抵觸判示 ◦ Trade Secret 에 의한 保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8 美國, Source Code 使用을 許可한 狀態下에서도 Source Code의 機密性이 維持되고 있다면 Trade Secret로 保護 可能 (Management Science America Inc : 判示)

2. 컴퓨터프로그램 保護法의 內容

가. 프로그램 保護對象 및 範圍

컴퓨터 프로그램 保護法에 의한 保護對象은 原則的으로 大韓民國 國民이 創作한 프로그램으로 限定하되 外國人の 프로그램은 1987 年 7 月 우리나라가 加入한 世界著作權協約 (UCC :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에 따라 保護키로 하였다.

다만, 外國人の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大韓民國內에 主된 事務所가 있는 外國法人이 創作한 프로그램이나 大韓民國內에서 맨 처음 發行된 外國人の 프로그램 (外國에서 프로그램이 發行된 後 30日 以內에 大韓民國에서 發行된 것을 包含)은 國際協約에 關係없이 컴퓨터 프로그램保

護法에 의해서 보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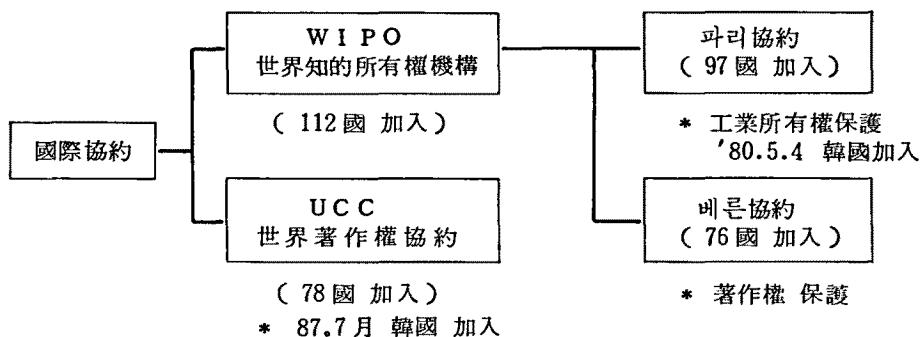
프로그램發行에 있어 外國과 우리나라 사이에 30日間의 發行日字 差異를 認定한 事由는 著作物 發行에 따른 諸般節次 등을 推進하는데 걸리는 時間을 勘案한 것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保護範圍는 프로그램 言語로 쓰여진 表現 그 自體에 限하며 프로그램을 作成 또는 이를 表示하기 위하여 使用되는 文字·記號 등의 프로그램言語, 프로그램과 시스템 分析 또는 이의 開發을 위하여 認定되고 있는 標準的인 規則이나 約束인 프로그램規約, 그리고 컴퓨터가 作動하는 順序 또는 一定한 結果를 얻기 위한 論理的 處理順序, 즉 프로그램解法 등은 保護範圍에서 除外되고 있다.

이 외에 프로그램의 開發에 있어 全段階에 對應하는 過程을 記述한 프로그램技術書나 프로그램의 理解 및 適用을 돋기 위한 프로그램 附屬資料는 一般 圖書著作權의 範圍內에서 保護가 可能하다.

〈圖表III-8-2〉

知的所有權關係 國際協約 現況



〈圖表III-8-3〉

各國의 컴퓨터프로그램 用語定義 比較

國別	컴 퓨 터 適 用	目 標	保 護 範 圈
美 國	컴퓨터內에서 直接 또는 間接으로	어떤 結果를 일으키기 위하여	陳述 또는 指令
日 本	電子計算機를 機能시켜	1의 結果를 얻을 수 있도록	指令의 組合으로 表現된 것
臺 灣	直接, 間接으로 컴퓨터를 利用하여	特定結果를 가져올 目的으로	組立된 指令
WIPO	情報處理能力을 갖는 機械로서	所定의 機能, 作業, 結果를 指示, 遂行 達成할 수 있는	指示命令의 集合
韓 國	컴퓨터 内에서 直接 또는 間接으로	特定한 結果를 얻기 위하여	一聯의 指示, 命令으로 表現된 것

나. 프로그램著作權의 發生과 內容

프로그램의 著作者에게 賦與되는 프로그램著作權은 프로그램創作과 同時に 發生하며 同權利의 發生에는 어떤 形式이나 節次의 履行을 要하지 아니한다.

프로그램著作權은 프로그램創作完了時부터 50年間 存續하며 프로그램著作者가 相續人이 없이 死亡하거나 프로그램著作權을 가지고 있는 法人 또는 團體가 解散되어 民法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에 歸屬되는 경우에는 當該 프로그램著作權은 消滅된다.

프로그램著作權에는 著作人格的 權利로서 姓名表示權, 公表權, 同一性維持權이 있고 著作財產的 權利로서 複製·改作·翻譯·配布 및 發行權이 있다.

이중 公表權은 創作한 프로그램을 一般 또는 特定人에게 發行·提示與否를 決定할 수 있는 權利이며 未公表中인 프로그램을 讓渡 또는 貸與한 경우에 特約이 없는 때에는 公表에 同意한 것으로 看做된다. 未公表中인 프로그램을 母體에 2次의 프로그램이 作成되어 公表된 경우에는 2次의 프로그램作成에 原用된 원프로그램의 該當分野에 限하여 公表된 것으로 處理된다.

同一性維持權은 프로그램의 題號, 內容 및 形式의 同一性을 維持하는 權利이나 프로그램의 效率的 活用 또는 컴퓨터設備交替 등에 따른 프로그램의 變更은 프로그램著作權者の 許諾을 얻지 않고서도 可能토록 하였다.

프로그램著作權은 프로그램著作者에 주어지는 排他的 權利이나 教育過程에서 使用하는 경우, 教科書에 揭載하는 경우 또는 家庭과 같은 限定된 場所에서 個人目的으로 使用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著作權이 制限되고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著作權은 全部 또는 一部를 讓渡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을 委託開發한 경우 特約이 없으며 프로그램 開發者에게 프로그램著作權이 주어진다.

프로그램을 法人著作物로 認定하는 경우는 法人的 企劃下에 創作된 프로그램으로서 法人名義로 公表된 것에 限하여 契約이나 勤務規則 등에 달리 定함이 없는 때에 이를 認定하고 있다.

다. 프로그램 著作權의 侵害와 救濟

正當한 權原을 갖지 않은 者가 他人의 프로그램을 公表, 發行, 改作, 翻譯, 配布 또는 無斷複製하거나 프로그램製作者의 實名 또는 異名을 變更, 隱匿하는 行為 또는 프로그램의 題號를 變更하는 것 등은 프로그램著作權의 侵害에 該當된다.

여기서 複製라 함은 原프로그램의 再製를 뜻하며 다시 製作된 프로그램이 原프로그램과 同一할 必要는 없으며 설령 프로그램에 多少의 修正·增減이 있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의 同一性이 存在하면, 同一物의 複製라고 보며 複製權이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프로그램著作權者は 權利를 侵害하거나 侵害할 憂慮가 있는 者에 대하여 侵害의停止 또는

豫防을請求할 수 있으며 侵害行爲에 의하여 만들어진 物件 또는 道具에 대해서도 廢棄請求가可能하다. 그리고 權利侵害를 입은 者는 侵害行爲에 의하여 얻은 利益額을 損害額으로 測定하여 損害賠償請求를 할 수 있으며 이 外에 프로그램著作權者가 權利行使로 通常의으로 얻을 수 있는 金額을 損害額에 追加할 수 있다.

프로그램著作權을 公表, 複製, 改作, 翻譯, 配布, 發行 등의 方法으로 侵害할 경우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3百萬원 以下の 罰金에 該當된다. 그리고 正當한 權原이 없이 프로그램著作權

<圖表III-8-4>

프로그램權利 侵害形態의 例示

區 分	侵 該 形 態
프로그램作成 過程에서의 無斷 利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他人의 프로그램을 自己가 開發한 것처럼 再製하는 것. ◦ 正當하게 使用許諾을 받은 者가 法에서 許容하고 있는 特定境遇 以外에 그 프로그램의 複製物을 作成하는 行爲 ◦ 他人이 創作한 프로그램을 再製하여 自己가 創作한 것처럼 表示하여 販賣하는 行爲 ◦ 他人의 프로그램을 一部 修正하여 個別의 프로그램인 것처럼 表示하여 販賣하는 行爲
프로그램의 出力 과 無斷複製 · 配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을 Hard Copy 形態로 Print Out 하는 行爲 ◦ 正當한 權利를 갖지 아니한 者가 無斷히 出力하여 他人이 알아보기 쉽도록 表示하는 行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라운관에 影像으로 出力하는 行爲는 複製에 該當되지 않는다는 것이 通說임. ◦ 一般公衆이 알 수 없는 Object Program을 配布하는 境遇 또는 半導體칩 즉 ROM에 收錄시킨 境遇에도 公表로 看做됨.
言語의 置換과 記錄媒體의 變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프로그래밍言語로 쓰여진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래밍言語言로 바꾸어 쓰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例: COBOL로 作成된 프로그램을 ASSEMBLER로 하는 것은 複製에 該當 ◦ 프로그램을 磁氣테프에서 磁氣테프나 磁氣디스크 또는 印刷物로 記錄媒體의 形式을 變換시키는 것은 複製에 該當 ◦ 소스프로그램에서 오브젝트프로그램으로 變換하는 것. ◦ 어떤 프로그램을 多少 修正, 追加하여 別途의 다른 프로그램을 作成하는 行爲 ◦ 一定한 規則에 의하여 原프로그램을 一部 修正하는 行爲 ◦ 프로그램의 Instruction의 配列을 바꾸는 行爲

者의 實名 등을 變更, 隱匿하거나 프로그램의 題號를 變更하는 行爲를 한 경우 1年 以下의懲役 또는 1百萬원 以下의 罰金이 適用된다

라. 프로그램의 登錄과 效力

프로그램은 創作과 同時に プログラム著作権이 發生하며 プログラム 創作時로부터 1年 以内에 プログラム創作事實을 立證받기 위하여 當該 プログラム의 複製物과 함께 プログラム의 名稱, 題號 및 プログラム著作権의 實名 등을 登錄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登錄은 プログラム著作権의 效力發生要件은 아니나 プログラム을 登錄한 경우 登錄된 創作年月日에 プ로그램의 創作이 있는 것으로 法的으로 推定받는 利點이 있다.

그러나 プログラム著作権의 移轉・質權의 設定・變更・消滅 및 處分制限 등에 대하여는 プログラム著作権을 移轉받거나 質權 등을 設定하고자 하는 者가 プログラム著作権을 登錄하지 않는 경우에는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없다. 따라서 プ로그램의 登錄과는 달리 プ로그램著作権의 登錄은 第3者에 대한 對抗要件이 되는 것이다.

프로그램複製物의 提出은 Source Code 또는 Object Code에 關係없이 プログラム 複製物 全體를 提出하거나 一部分의 提出로 プログラム創作 事實을 充分히 立證할 수 있을 때에는 部分的으로 抽萃하여 提出할 수 있다. 部分的으로 抽萃할 경우 全 プログラム의 20% 以上을 提出하거나 特別히 Source Code로 提出하고자 할 때에는 プログラム의 처음 및 나중部分으로 나누어 提出하되 連續된 プ로그램인 경우에는 각 10枚 以上을, 連續된 プ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각 25枚 以上을 提出하면 된다. 提出된 プ로그램은 非公開裡에 保管되어 プ로그램 複製是非 發生時 證據提示 등에 活用된다.

3. 컴퓨터프로그램 保護法 運營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은 遷及效를 認定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內國人の プログラム은 이 法의 施行日인 87.7.1 以後에 開發된 プ로그램에 限하여 保護되며 外國人の プ로그램은 우리나라가 加入한 世界著作権協約에 의해 87.10.1 以後에 開發된 プ로그램부터 相互主義原則에 따라 保護를 받게 된다. 그러나 法施行日 以前에 開發된 プ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技術事項을 追加하여 持續的으로 補完된 2次의 プ로그램은 既存技術을 母體로 하여 斷絕 없이 連續的으로 補完・發展되어 가고 있는 プ로그램의 特性을 勘案하여 이 法에 의해 保護를 받도록 되어 있다.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과 著作権法과의 關係에 있어서는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하여 著作物性을 認定하고 있는 점을 考慮하여 相互補完的으로 運營토록 할 것이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에서 規定하고 있는 以外의 事項에 대하여는 著作権法의 精神을 援用하여 圓滿하게 處理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프로그램著作者나 著作權者가 不明하거나 連絡이 되지 않은 事由로 인한 當該 프로그램의 使用 許諾要求에 대하여는 프로그램著作權者の 權益을 保護하기 위하여 不得已한 경우가 아니면 許容되지 않을 것이다.

컴퓨터프로그램 登錄은 87.7月부터 9月末까지 13件에 不過하나 이는 法施行日 以後에 開發된 프로그램만을 對象으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開發活動이 活潑해지고 外國프로그램을 保護하게 되는 10月 以後에는 增加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圖表III-8-5>

컴퓨터프로그램 登錄現況 ('87.7 ~ 9月)

프로그램區分	件數	國籍
工程管理用	1	韓國
技術計算用	5	韓國
事務管理用	5	韓國
娛樂器用	2	韓國
計	13	